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1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김승수·김예지・임이자

우재준 • 성일종 • 박충권

김장겸 • 주호영 • 신성범

김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 박물관·미술관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자료의 보존·조사·연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립 박물관으로서, 국립한글박물관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는 한글과 한글문화의 보존·확산을 맡는 국립 박물관으로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와 근현대사 및 한글문화와 관련한 각 박물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 그 지위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법률 제 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또는"을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또는"으로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을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으로 한다.

- ③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을 둔다.
- ④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한글박물관을 둔다.

- 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에 관하여 제4조제1 항의 사업 외에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근현대 역사 박물관"으로 본다.
- ①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문화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한글박물관"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설립과 운영) ①・② (생	제10조(설립과 운영)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③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
	의 수집·보존·전시와 체계적
	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대한
	민국역사박물관을 둔다.
<u><신 설></u>	④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자
	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체계
	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
	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
	립한글박물관을 둔다.
<u>③</u> (생 략)	<u>⑤</u>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u>⑥</u>
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	
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	
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	<u>,</u> 대
관 <u>또는</u> 국립현대미술관의 지	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
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물관 또는
둘 수 있다.	

- ⑤ 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제1 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 ⑤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

<신 설>

①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 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⑦</u> 제5항		
<u>8</u>		
- <u>제5항</u>		
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한		
민국 근현대 역사에 관하여 제		
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근		
현대 역사 박물관"으로 본다.		
⑪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문화		
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		
관"은 "한글 박물관"으로 본다.		
<u> </u>		
미술관・국립민속박물관・대한		
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		
물관		

	
<u>⑧</u> (생 략)	① (현행 제8항과 같음)